#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71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 박지혜・이기헌・김성환

임미애 · 황명선 · 위성곤

이건태ㆍ허 영ㆍ이소영

김정호 · 조인철 · 서영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경우주거용보다 산업용 건물 지붕에 발전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태양광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을 직접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태양광 입지 확보, 인·허가 기간 단축, 설비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촉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 외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를 "제조시설 설치승인 신청서[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간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설치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 조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①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 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 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 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제조시설 설 <u>또는 구청장의</u> 승인을 받아야 치승인 신청서[공장건축물의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 지붕·옥상, 그 밖에 대통령령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간 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 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신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용ㆍ보급 촉진법ㅣ 제2조제2 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 게 신고하여야 한다. 광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말 한다) 설치 계획서를 포함한다] 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출하고-----

	,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